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또는 해임) 내용

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력 ¹⁾	자격 요건 확인 결과
서이덕 (徐二德)	전무	여	631116	2021.12.22	2022.01.01. ~ 2023.12.31.	내부 통제 총괄	-	-15.01BNK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직무 대행상무보 -17.01동사 홀세일본부장 상무 -18.01동사 자문위원 -20.01동사 상무 -22.01동사 전무(現)	적격
한수동 (韓樹東)	전무	여	661027	2021.12.22	2022.01.01. ~ 2023.12.31.	CRO및 리스크 관리 본부	-	-16.01교보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(CRO) 상무보 -18.01동사 리스크관리본부장(CRO) 상무 -21.06BNK투자증권 상무 -22.01동사 전무(現)	적격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일	해임사유 ¹⁾	비고 ²⁾
안기수 (安奇秀)	620210	2019.12.16	2021.12.22	임기만료 (2021.12.31.)	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서이덕 (徐二德)	직 위	전 무
심 사 항 목		심 사 결 과	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“해당사항 없음”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“해당사항 없음”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“해당사항 없음”	
총 합 의 견			
준법감시인 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, 경력 등을 고려할 때 (주)BNK투자증권 준법감시인으로서 적임자로 사료 됨			
2021년 12월 일			
(주)BN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서 이 덕 (인)			
(주)BNK투자증권 대 표 이 사 김 병 영 (인)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한수동 (韓樹東)	직 위	전 무
심 사 항 목		심 사 결 과	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“해당사항 없음”	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“해당사항 없음”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“해당사항 없음”	
총 합 의 건 위험관리책임자 결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며, 경력 등을 고려할 때 (주)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적임자로 사료 됨			
2021년 12월 일 (주)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한 수 동 (인) (주)BNK투자증권 대 표 이 사 김 병 영 (인)	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